

2013년 7월 13일 14:00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측 박주민 변호사 진술

안녕하십니까?

청구인측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측은 DNA 신원확인 정보의 특이성과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침해가능성, DNA 신원확인 정보의 채취 및 이를 이용한 수사의 인권침해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와 이해정 변호사가 나누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NA 신원확인 정보의 특이성과 그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입니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0년 DNA감정법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비코드화된 부분, 즉 소위 JUNK DNA가 감정의 대상이 되는 이상 개인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지문과 다를 것이 없기에 프라이버시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이 사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자신들 주장의 근거로 주되게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DNA 신원확인 정보는 아무런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소위 JUNK DNA로부터 채취되며, 일단 채취된 후에 염기서열반복횟수만 수치화되어 보관되기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은 지문제공자 개인의 신원**만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지만 DNA 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것을 넘어서 개인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까지도** 제공합니다.

2003년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종료되면서 발표된 인간 유전자의 수는 종전 10만개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과는 달리 2만5천개 이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전자 하나하나의 기능뿐만 아니라 유전자로 발현되지 않는 염기서열 부위, 유전자 상호간의 관계, 유전자와 환경과의 관계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3년부터 시작된 “엔코드(ENCODE, Encyclopedia of DNA Elements) PROJECT”라는 국제협력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07년도에 1단계, 2012년에 2단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기존에 쓸모없는 유전자로 판단되었던 유전자들 중 80%에 달하는 유전자가 실제로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의미한 부분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후 과학기술이 보다 발달할 경우 유전자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가, 그리고 기능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능이 지속적으로 밝혀지리라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소위 JUNK DNA라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낸 참고서면의 저자인 권창국 교수님도 논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더하여 DNA 정보를 통해 생물학적 예측 이외에도 폭력성이나 지능(1969년 아서 쟈슨의 연구 이래)이 예측될 수 있다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연구들이 신빙성이 약하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치독일의 우생학과 같은 흐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채취된 이후 염기서열반복횟수만 수치화되어 보관되기에 개인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나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DNA 신원확인 정보는 총 15개의 좌위의 염기서열반복횟수로 구성되는데, 이 중 AMEL이라는 좌위는 성염색체이므로 이것만으로도 바로 해당인의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좌위인 FGA와 13번째 좌위인 D21S11의 염기서열반복횟수는 고려대학교 등 국내연구진의 연구를 통해 인종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번째 좌위인 D21S11는 21번째 염색체에서의 염기서열반복횟수를 의미하는데 이 염색체는 다운증후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위 좌위의 염기서열반복횟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해당인에게 다운증후군증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신원확인 정보만 제공하는 지문과 달리 DNA 신원확인 정보는 당연히 DNA를 공유하는 가계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 확인도 가능하게 합니다. 개인의 승낙만으로 사실상 가계 구성원의 정보가 모두 노출되는 것이기에 개인의 승낙만으로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조차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가계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연세대 의과대학과 대검찰청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대검찰청은 DNA분석을 통한 가계검색을 준비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문정보의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식별기능만 있습니다. 즉, 가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병력 등 개인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NA 신원확인 정보는 개인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그를 넘어서 가족에 대해서도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DNA 신원확인 정보가 지문과 다를바 없다는 13년 전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190)에서 지문의 채취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지문이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만 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판단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대로라면 DNA 신원확인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지문정보는 직접 날인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정보수집자에게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문정보에 대해 정보의 채취와 보관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하였는데, 유전자정보의 경우 채취 후 보관과 분석 과정이 지문정보에

비하여 복잡하여 오염이나 시료혼동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컨대, 2004년 미국 뉴저지검찰은 36년 전 소녀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Bellamy를 체포하였는데, 이때 유전자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후 체포된 Bellamy의 유전자가 오염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풀려났고 이후 진범이 밝혀졌습니다(2008. 12. 26. LA Times Story). 또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5년간 3,100 건의 유전자정보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검사요원의 유전자가 오염된 사례가 14건, 알려지지 않은 사람 유전자가 오염된 사례가 3건, 다른 사건의 유전자가 오염된 사례가 6건 있었고, 아예 유전자 시료가 바뀐 사례도 3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2002년 외국인인 한킨이 투스칸 지역에서 어린 소녀를 살해한 죄로 체포되었는데, 나중에 유전자검사 결과의 잘못이 밝혀지고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도 지문과 다른 DNA 신원확인 정보의 특징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